

〈지방세 기본법〉

※'26년 상반기 개정 예정

개정 전	개정 후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.	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지역자원시설세	10. -----
가. ~ 바. (생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사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</u> <u>(「지방세법」 제142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)에 매립하는 때</u>
<u>사. (생략)</u>	<u>아. (현행 사목과 같음)</u>
11. · 12. (생략)	11. · 1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지방재정법〉

※'26년 상반기 개정 예정